

2018년도 제7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

2018년도 제7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8년 11월 1일

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근무부서	임용분야	임용직급	임용인원	근무기간	임용분야 주요업무
투자유치과	항공분야 투자유치	일반임기제 (행정5급)	1명	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안공항과 항공특화산업단지를 활용한 항공기정비(MRO)·항공 산업유치 항공노선 개설 투자유치계획, 타깃기업 선정 등 유치 협상을 위한 항공전문가 채용
기업도시 담당관실	모터스포츠	일반임기제 (행정6급)	1명	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 모터스포츠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 경주장 홍보, 마케팅 등 관련업무 경주장 연계 행사 발굴 및 유치 모터스포츠 관련 기관과 협조 및 커뮤니케이션
해양수산 기술원	수산생물 병성감정	일반임기제 (해양수산 연구사)	1명	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산생물 방류종자 질병검사 수산생물 병성검사 필수요원 수산생물 방역체계 구축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관리 수산생물 질병(기생충) 모니터링 어업인 방역교육 및 질병관리 상담 등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.

2. 응시자격

가. 공통사항 (면접시험 최종일 기준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
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 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○ 주소지·성별·연령: 제한 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친 사람 또는 면제자)

나.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(면접시험 최종일 기준)

임용분야 (근무부서)	자 격 요 건
항 공 분 야 투 자 유 치 (투 자 유 치 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•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•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<p>【필수요건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공정비사, 항공기관기술사, 항공기체기술사 자격증 또는 미국 FAA 발행 항공정비, 항공관제 면허 중 1개이상 소지자 ※ FAA(미국연방항공청,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)
	<p>(관련분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에서 품질보증, 항공정비, 항공부품산업 분야
	<p>(우대사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어 브리핑 가능자(영어회화 능력자) - 투자유치 업무 有경험자

임용분야 (근무부서)	자 격 요 건
모 터 스포 츠 (기업도시담당관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•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•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(관련분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관, 연구기관, 민간 기업체에서 모터스포츠 관련 기획, 전략, 경영, 홍보, 마케팅 분야 <p>(우대사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어회화 능력자
수 산 생 물 병 성 감 정 (해양수산기술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•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[필수요건] :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소지자</p> <p>(관련분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관, 연구기관, 민간기업체에서 근무·연구 분야 <p>(우대사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산질병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- 수산질병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

3. 근거법령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나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다.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라.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4. 보수수준

가.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.

나.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(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관련)

- 5급(상당) : 상한액 없음, 하한액 58,004천원
- 6급(상당) : 상한액 72,112천원, 하한액 48,050천원
- 연구사 : 상한액 58,936천원, 하한액 41,859천원

※ 연봉외 급여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5. 시험방법 및 일정

가. 시험방법

○ 1차 시험: 서류전형

- 응시분야 관련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○ 2차 시험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
- 5대 평정요소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
※ 5대 평정요소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나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합격자발표
'18. 11. 1.(목)	'18. 11. 9.(금) ~ 11. 13.(화)	서류전형	'18. 11. 15.(목)	'18. 11. 16.(금)
		면접시험	'18. 11. 22.(목)	'18. 11. 23.(금)

※ 면접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.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: 별지1~5호(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수처: 전라남도청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(행정동 8층)

다. 접수방법: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-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
 - 우)58564,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(전라남도청)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
- 우편 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)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우편송부(회송용 봉투에는 등기우표 부착, 수신인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)

7. 응시자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1호 서식>

- 응시수수료 : (5급) 10,000원, (6~7급, 연구사) 7,000원

※ 응시수수료는 **전라남도 수입증지**(전남도청 1층 농협에서 판매), 우편 접수시는 **우편통상환**(우체국에서 판매)으로 대체(**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**)

② 이력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
-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

③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
④ 직무수행계획서1부 <별지 제4호 서식>

⑤ 최종학교 학위증서(또는 졸업증명서) 1부

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⑥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,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기재

- 제출된 경력(재직)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(근무기간, 직책, 담당업무 등)

- 경력(재직)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,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
- 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
 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 - ▶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
- ⑧ 주민등록표 초본 1부(병역사항 포함 발행)
- ⑨ 자격(면허)증 등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⑩ 학위·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
< 응시자 유의사항 >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)내의 서류여야 함
-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 첨부
- 원본 제출서류는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

8. 기타 사항

- 가. 전라남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남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나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- 라. 서류에 기재된 내용(학력, 경력 등)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마.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바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사.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임용결격 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아.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.
- 자.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.
- 차.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카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채용절차 관련 문의: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(☎ 061-286-3372)

▶ 담당직무 관련 문의

임 용 분 야	담 당 부 서	연 락 처
항공분야 투자유치	전라남도 투자유치과	061-286-5171
모터스포츠	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실	061-286-3141
수산생물병성감정	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	061-550-0641